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3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나.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자 추가(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1)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까지 확대 하려는 것으로,

-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6조의2),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규정(안 제7조의2)을 신설하고, 현행 조문 규정 중 '저소득층 아동' 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구강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2016년 소요예산은 총 1억 1,167만원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이며, 이 중 학생치과주치의 비용 9,432만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 1,735만원임.

1) 초등학교, 공민학교(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게 교육하는 곳)

참 고 자 료

1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